

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|           |       |
|-----------|-------|
| 의 안<br>번호 | 16-92 |
|-----------|-------|

제출년월일 : 2016. 10.

제 출 자 :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

## 1. 개정사유

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및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을 현행 조례에 반영하고,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함.

## 2. 주요내용

가.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변경 (안 제2조)

- 위원회 위원장의 임명 방법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
-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을 위원으로 위촉사항 신설
- 관련 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위원 제외

나. 위원의 위촉 임기를 한차례 연임으로 개정 (안 제3조)

다. 위원회의 심의대상 사항을 상위법에 따라 변경 및 신설 (안 제4조)

-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」를 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」로 변경
-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을 심의대상에 신설
- 계약의 규모와 상관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심의 대상을 신설

- 라. 계약심의위원회 서면심의 운영 규정 삭제(안 제5조)
- 마. 위원회 위원의 해촉 규정을 상위법에 따르도록 변경 및 신설(안 제11조)
- 바.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의 상한액을 폐지하고 공원공사를 신설(안 제12조)
- 사. 기타 알기 쉬운 법령 기준에 따른 용어, 표기 조정(안 제5조 ~ 제15조)

### 3. 참고사항

#### 가. 관계법령

-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』 제9조2항, 제16조제5항, 제32조제1항
-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59조, 제60조, 제106조제2항, 제106조2, 제108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규제여부 : 신설·강화되는 규제 없음

### 4. 기타사항

가. 입법예고 : 2016. 9. 1. ~ 9. 21. (제출된 의견 없음)

나. 감사담당관의 자치법규 부패영향 평가 : 원안동의

다. 가정복지과의 자치법규 성별영향분석 평가 : 원안동의

라. 서울특별시 마포구 조례·규칙 심의회 심의·의결 (2016.10.11)

마.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 
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

바. 신·구조문 대비표 1부

##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 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,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령"이라

한다) 제10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의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 
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제2조제2항제1호 중 “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에”를 “「고등교육법」 제2조  
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”로, “중에 있는 자”를 “중인 사람”  
으로 하고, 같은 항 제2호 중 “자로서”를 “사람으로서”로, “풍부한 자”를 “풍부한  
사람”으로 하며,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 
말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 
지식이 풍부한 사람

제2조제2항제4호 중 “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의한”을 “「건설기술 진흥법」  
에 따른”으로, “의한”을 “따른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, 같은 항  
제6호 중 “공무원”을 “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”으로, “있는 자”를  
“풍부한 사람”으로 하고,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“구”라 한다)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  
제3조제1항 중 “회무”를 “사무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당연직인 위  
원장을 제외한 위원”을 “위촉위원”으로, “연임”을 “한 차례만 연임”으로 하  
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잔임 기간으”를 “남은 임기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 
““계약업무담당주사””를 “계약업무 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서울특별시 마포구가”를 “구가”로, “각  
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

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.

제4조제1항제1호 중 “경쟁입찰에 있어서”를 “입찰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
제4조제1항제5호를 같은 항 제6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5.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

제4조제2항을 같은 조 제3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모와 관계 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4조제3항(종전의 제2항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”를 “각 호”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제1호 중 “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”을 “제1항에서 심의대상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(종전의 제2항)제2호 중 “기타”를 “그 밖의”로,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한다.

제5조제3항 중 “심사”를 “심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삭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”를 “영 제107조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제6조제3항 중 “부의하는”을 “회의에 부치는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

음과 같이 한다.

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.

제6조제8항 중 “각1인”을 “각 1명”으로 한다.

제8조제1항 중 “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7조에 따라”로, “부의하여야”를 “회의 안건으로 부쳐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의를”을 “제1항에 따라 회의에 부칠 안건을”로, “부의”를 “회의 안건을”로 하며, 같은 항 단서 중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2항의 규정에 의한”을 “제2항에 따른”으로 한다.

제10조제1항 중 “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제3항에 따라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8조제3항에 따라”로 한다.

제1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각호의”를 “각 호의”로, “때에는 임기만료전 이라도 당해위원을”을 “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(제4호는 제외)

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
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2조의 제목 “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)”을 “(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)”로 하고,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영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영 제60조제2항에 따라”로, “이상 10억원 이하”를 “이상”으로, “제외한다.”를 “제외한다”로, “당해”를 “해당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0호를 같은 조 제11호로 하며, 같은 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#### 10. 공원 공사

제13조제1항 중 “부의안건”을 “회의에 부친 안건”으로 한다.

제14조제1항 본문 중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하고, 같은 항 단서 중 “계약심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담당자, 관계공무원”을 “구 소속 공무원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9조에 따라”로, “범위 안에서”를 “범위에서”로 한다.

제15조 중 “시행에 관하여”를 “시행에”로 한다.

#### 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제4조제1항제5호는 2016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조치)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조례에 따라 신규위촉된 것으로 보며, 남은 임기동안 그 직을 유지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임명된 위원장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위원장의 직을 유지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| 개<br>정<br>안  |
|--|--|
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32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(이하 "령"이라 한다) 제1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과 법제16조제2항, 제4항 및 영제59조, 제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자의 감독대상공사 상한금액 및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무관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</p> | 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 제16조제2항,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주민참여감독자의 실비지급기준에 필요한 사항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계약심의위원회 구성) 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계약심의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</p> <p>②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</p> |



중에서 서울특별시마포구청장 (이하"구청장"라 한다.)이 위촉한 자로 하며, 이 경우 구청장은 영 제10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대학에서 관련분야의 교수(부교수·조교수를 포함한다)로 재직 중에 있는 자
2.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로서 관련분야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자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자
4.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의한 해당분야 건설기술자 또는

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. 이 경우 구청장은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(이하 "영"이라 한다) 제106조제3항에 따른 서울특별시장이 작성한 위원 자격을 갖춘 전문가 현황이 있는 경우 이를 활용하여 위촉할 수 있다.

1. 「고등교육법」 제2조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에----- 중인 사람
2. ----- 사람으로서 ----- - 풍부한 사람
3. 시민단체(「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」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)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회계 및 조달계약 업무에 관한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사람
4. 「건설기술 진흥법」에 따른 -----

「국가기술자격법」 등 관련 법령에 의한 해당분야의 기술 자격 취득자

5. 관련법령에 의하여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관련분야의 협회 등 단체 또는 관련 학회에서 추천하는 자

6. 국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의 계약·기술 등에 대한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자

<신 설>
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구청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② 위원 중 당연직인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.

③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

-----

---- 따른 -----

-----

<삭 제>

6. -----

-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-----

---- 풍부한 사람

7. 서울특별시 마포구(이하 "구"라 한다) 재무관 또는 분임재무관

제3조(임무 및 임기) ① -----

----- 사  
무-----

-----

-----

-----

-----.

② ----- 위촉위원-----

-----

한 차례만 연임-----

----- 남은

임기-----.

③ -----

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“계약업무담당주사”로 한다.

제4조(기능) ① 위원회는 서울특별시 마포구가 발주하는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공사 및 10억원 이상인 물품·용역 등의 계약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 다만,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「조달사업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조달청에 의뢰한 계약은 제외한다.

1.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
2. · 3. (생략)
4. 법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
<신설>

5. (생략)

<신설>

----- 계약업무 담당주사-----.

제4조(기능) ① -----  
----- 구가 -----  
-----  
----- 각호-----  
----- . 다만, 긴급한 재해복구 사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을 조기 집행할 필요가 있는 사업은 제외한다.

1. 입찰에서 -----  
-----
2. · 3. (현행과 같음)
4.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31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사항
5. 관련 업체가 법 제9조의2에 따른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이의제기한 사항
6. (현행 제5호와 같음)

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호 및 제6호에 관한 사항은 계약의 규

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.

1. 영 제108조에서 심사대상으로 정한 이외 사업의 입찰참가자격제한, 낙찰자결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

2. 기타 구청장이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·② (생략)

③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함에 있어 심사 또는 자문대상 안건과 이해관계에 있는 위원을 심의 또는 자문에 참석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.

④위원장은 긴급을 요하거나 회의소집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.

제6조(소위원회) ①위원회는 제4조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

모와 관계없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

③ ----- 각 호 -----  
-----.

1. 제1항에서 심의대상-----  
-----  
-----

2. 그 밖의 -----  
----- 회의에 부치는 --

제5조(회의소집 및 심의) 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  
----- 심의 -----  
-----  
-----.

<삭 제>

제6조(소위원회) ① -----  
-----  
-----

경우에는 심의 또는 자문 내용에 따라 영 제107조의 규정에 의거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소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회의 위원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 다만, 위원장은 심의 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.

③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.

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계약심의위원회 위원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 전문성을 갖춘 자를 선임한다.

⑤ ~ ⑦ (생략)

⑧ 소위원회별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, 구청장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.

제8조(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) ① 구청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 또는 자문요청서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위

-----  
----- 영 제107조에 따라  
-----  
-----.

②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 -----  
-----.

③ -----  
----- 회의에 부치는  
-----.

④ 소위원회 위원장은 위원회의 위원장이 되며,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 위원 중에서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원장이 지명한다.

⑤ ~ ⑦ (현행과 같음)

⑧ ----- 각 1명-----  
-----.

제8조(심의기간 및 심의결과 통보 등) ① ----- 제7조에 따라  
-----  
-----



1. 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월 이상의 해외 여행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
2.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3. 위원이 심의과정에서 공정하지 않은 심의 또는 자문으로 계약사무 수행에 현저한 피해를 끼쳤다고 판단될 때
4. 기타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<신 설>

제12조(주민참여대상공사 및 상한금액) 영제60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는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상 10억원 이하(단, 연간단가계약 및 책임감리가 있는 공사는 제외한다.)의 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로

1.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
2.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
3. 직무태만,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
4. 영 제107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영 제92조의7제1항 각 호(제4호는 제외한다)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하는 경우
5.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

제12조(주민참여감독대상공사) 영 제60조제2항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이상-----  
-----  
-----제외한  
다-----  
-----

하며, 감독 일수에 대하여는 당  
해 공사의 특성을 고려하여 발  
주 부서장이 정한다.

1. ~ 9. (생략)

<신설>

10. (생략)

제13조(비밀유지의 의무) ①회의  
에 참석한 위원은 부의안건에  
대한 내용을 외부에 누설하여서  
는 아니된다.

② (생략)

제14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위원  
회의 위원 및 관계전문가와 주  
민참여감독자에 대하여 예산의  
범위 안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 
지급할 수 있다. 다만, 계약심  
의위원회 관련 위원장 및 계약  
담당자, 관계공무원이 그 소관  
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회  
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  
지 아니하다.

②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 
기관 및 관계전문가에게 기술검  
토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 
범위 안에서 기술검토 수당을  
지급할 수 있다.

----- 해  
당 -----

1. ~ 9. (현행과 같음)

10. 공원 공사

11. (현행 제10호와 같음)

제13조(비밀유지의 의무) ① ----  
----- 회의에 부친 안건 ----  
-----  
-.

② (현행과 같음)

제14조(수당 및 여비 등) ① ----  
-----  
-----  
범위에서 -----  
----- . -----  
----- 구  
소속 공무원-----

② 제9조에 따라 -----  
-----  
-----  
범위에서 -----  
----- .



제15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  
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  
으로 정한다.

제15조(시행규칙) ----- 시행  
에 -----  
-----.